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 유한공사  
간의 업무협정서

## 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 유한공사'(이하 중경문화산업투자)는 한국 콘텐츠 및 중경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문화교류와 더불어 연계 가능한 산업의 협력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 제1장 (목적 및 의무)

### 제1조 (목적 및 중점 협력분야)

양 기관은 한국 콘텐츠 및 중경시 문화산업 발전 위하여 협의를 일치하며 다음의 5개 협력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정을 체결에 동의한다.

- 가. “콘텐츠 +  $\alpha$ (제조업/ICT/관광/음식 등)” 융합교류
- 나. 중경문화산업주식투자 기금지원
- 다.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 우대정책. 한국기업이 중경 관련 문화산업지구 진입시 우대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자세한 프로젝트는 “일사일의”로 진행
- 라. 한중 문화산업교류 플랫폼 구축. 서비스기관 즉 한중문화산업 협력 촉진센터(이하 촉진센터라 칭함)
- 마. 공동 문화산업협력, 문화교류 행사 및 인력양성

### 제2조 (의무의 범위)

양 기관은 본 협정서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각국 영역에서의 법과 규율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이행한다.

## 제2장 (콘텐츠+@ 융합교류)

### 제1조 (콘텐츠 + $\alpha$ 의 상호교류)

- '콘진원'과 '중경문화산업투자'는 한국 콘텐츠와 제조업/ ICT/ 관광/ 음식 등 융합교류에 적극 노력한다.

### 제2조 (부속합의)

- “콘텐츠 +  $\alpha$  의 융합교류” 의 세부사항은 부속서에 의한다.

## 제3장 (중경문화산업주식투자기금지원)

### 제1조 (한국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 가. '중경문화산업투자'는 중경 문화산업 주식 투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며 기금투자요구에 부합하며, 또 촉진센터를 통해 유입되는 한국 콘텐츠기업 및 프로젝트와 한중 합작 프로젝트에 기금사용 규정에 근거하여 적극 투자하여 사업 발전을 추진한다.
- 나. '콘진원'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우수콘텐츠 업체를 추천하고 '중경문화산업투자'는 중경의 우수한 문화기업을 추천하여 매년 1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합작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 다. 협력 의사가 있는 한중 프로젝트 발굴을 위하여 상호 최선을 다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제2조 (부속합의)

- “중경문화산업주식투자기금지원” 의 세부사항은 부속서에 의한다.

## 제4장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 우대정책)

### 제1조 (한국기업 우대정책)

- 가. '중경문화산업투자'는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 및 프로젝트가 진출할 경우 세제혜택, 각종 행정절차간소화, 금융혜택, 유통 및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한다.
- 나. '중경문화산업투자'는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콘텐츠 전시 및 유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협력의사가 있는 한국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문화 콘텐츠 제작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다. '중경문화산업투자'는 한중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콘텐츠로 인정 및 중국 내 유통/마케팅에 적극 지원한다.
- 마. “진흥원”은 중경기업이 한국에서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단,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별도 상의한다.

### 제2조 (부속합의)

-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 진출 및 콘텐츠기업 협력시 우대정책 및 지원의 세부사항은 부속서에 의한다.

## 제5장 (한중 문화산업교류 플랫폼 구축)

### 제1조 (콘진원 중경 사무소 설치)

- ‘콘진원’은 조건이 완벽할 때 충칭시에 중경사무소를 설립하며, 2015년내에 쌍방은 공동으로 협상하여 준비위원회를 설립한다. 중경문화투자그룹은 쌍방이 합의한 구체적인 설립기간에 근거하여 사무 및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 제2조 (한중문화산업 협력 촉진센터의 협력)

- “콘진원”과 “중경문화투자그룹”은 공동으로 촉진센터를 조직 설립하는데 동의하며, 쌍방 문화산업기업과 프로젝트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다.

### 제3조 (부속협약)

- 한중 문화산업교류 플랫폼 및 촉진센터의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서에 의한다.

## 제6장 (공동 문화교류 행사)

### 제1조 (문화교류 및 인력양성교섭교류)

- 가.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문화산업포럼, 한중 콘텐츠 전시회, 한국문화페스티벌, 한중 문화교류 행사(K-POP콘서트, 게임대회 등)를 상호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는데 동의한다.
- 나. '코진원'과 '중경문화산업투자'는 다양한 형식의 문화산업 전시회의 공동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양국에서 교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2조 (부속협약)

공동문화교류 행사의 세부사항은 부속서에 의한다.

## 제7장 (최종규정)

### 제1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2조 (개정)

양 기관은 제2장 내지 제6장의 부속서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업무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협약내용을 구성하여 부속서를 대체한다.

### 제3조 (발효 및 종료)

- 가. 이 협정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 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 나. 어느 한 기관은 다른 기관에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60일 후에 종료된다.

제4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로 작성된다. 그 두 가지 협정문은 동등하게 유효하며 정본이다.

제5조(본 협약의 효력범위)

양기관이 체결하는 본 협약은 각국 정부(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충칭시인민정부)의 지지하에 체결됨을 확인한다.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및 협력 행위는 한중 양국의 관련 법률 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중 문화산업 교류시 양기관을 유일한 프로젝트 협력기구로 상호 인정하며, 쌍방은 기업 및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양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권리·의무 승계)

본 협정 체결 후 '콘진원', '중경문화산업투자'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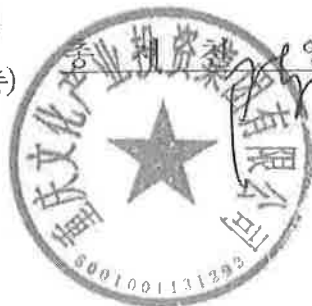
이상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한국어,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 유한공사  
중경시 위북구 홍호서로 18호 상평상취(18층)



원 장 송 심 각 (인)



양 (인)

#### [부속서 2-2 콘텐츠 연계 융합교류 부속합의서]

1. 양 기관은 “콘텐츠+@의 융합교류”에 있어서 그 범위는 본 부속서에  
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콘텐츠는 영화,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만화(웹  
툰포함), 캐릭터(부가상품포함), 패션 등을 포함한다.
3. 콘텐츠와의 융합교류 대상은, 융복합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제조업, 통신업,  
관광업, 미용업, 음식업 등을 포함한다.
4. 양 기관은 “콘텐츠+@의 융합교류”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동으  
로 수립하고 실질적 추진이 되도록 양기관 공동사업을 지정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부속서 3-2 중경문화산업 주식투자기금지원 부속합의서]

1. 중경문화산업투자는 기금투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한국 우수문화기업  
및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콘진원”과 협상 후 매년 투자계  
획 (투자규모, 투자대상, 투자방식 등)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우수 콘텐츠 업체 추  
천을 위한 선정절차(대상, 선정방식, 보조정책 등)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  
원의 선정절차에 따르되, 세부내용은 사전에 협의하고 “중경문화산업투  
자그룹”에 통보한다.
3. 양 기관은 매년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부속서 4-2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 우대정책 부속합의서]

1. 중경문화산업투자는 중경 문화산업지구 내 한국기업에 대한 협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중경시 정부측과 각 급 상관 정부기관이 한국기업에 우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한다.
2. 세제분야의 경우 한국기업이 중경시 내 법인설립(대표처 포함) 및 영업 행위, 공동제작 등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감면 신청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3. 행정절차 간소화의 경우 중경시 법인설립(대표처 포함) 절차, 공연허가 절차, 각종 사전심의에 대해서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금융지원의 경우 중경시 법인설립, 공동제작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해서 용자 서비스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5. 유통 및 마케팅 지원의 경우 한국콘텐츠 또는 중경시 공동제작 콘텐츠에 대해서 중경시의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6. 양 기관은 매년 한국기업 우대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7. “진흥원”은 중경기업이 한국에서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단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별도 상의한다.



[부속서 5-2 한중 문화산업교류 플랫폼 구축 부속합의서]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경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처를 2016년에 설립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국내 절차(사업승인, 운영예산 마련 등)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한다.
2.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은 중경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처 설립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 과 “콘진원” 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문화산업촉진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경시 대표처의 설립 초기 관련 업무를 제공한다. 쌍방 업체에게 프로젝트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기업 간 자문, 교류, 투자유치, 상업무역유통 및 융자 서비스의 업무 협력을 촉진하며 각급 정부기관 및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쌍방의 합작 프로젝트와 기업의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촉진센터” 는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 과 “콘진원” 에게 한중합작 프로젝트를 전달하여 우수한 프로젝트가 상호 자금보조와 투자지원 혹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속서 6-2 공동문화교류행사 부속합의서]

1. 중경문화산업투자그룹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 문화계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년 양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새로운 문화교류행사를 기획한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콘텐츠관련 행사에 중경문화산업 투자그룹은 그에 상응하는 협조를 지원하며, 중경시의 우수한 문화기업의 적극 참여를 격려한다.
3. 양 기관은 원활한 한중 문화교류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행사개최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된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 등의 제반사항을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행사개최장소가 자국의 경우 자국 행사에 대한 비용은 각 기관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양 기관은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콘텐츠관련 국제행사에 주빈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 등의 제반 사항은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도록 한다.